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농공단지²⁶³⁾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²⁶⁴⁾·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²⁶⁵⁾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세풍 일반산업단지¹단계, 보령주포 제2농공단지,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감면한도
사업용자산²⁶⁶⁾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²⁶⁷⁾

유의사항

- 감면받은 자가 감면대상사업을 폐업 또는 법인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6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64)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2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66)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267) 청년 상시근로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전	개정 후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지원대상 삭제
지원대상 추가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